##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8

발의연월일: 2020. 8. 25.

발 의 자:황운하·장철민·이정문

양기대 · 김민철 · 정성호

김성환 • 이수진(비) • 김병기

김영호 · 권칠승 · 맹성규

강선우 • 양정숙 • 김남국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여 왔음.

최근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나 따라다니기 등 괴롭힘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로 나아가기 이전 위험 상황에서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이에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

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범죄 이전 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함 과 동시에, 나아가 행위자 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내 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스토킹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일시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위험발생 방지 차원의 행정작용 측면에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지속·반복적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을 규정하여 처벌을통한 행위자 교화 및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하려 함(안 제2조, 제7조, 제17조 등).

나아가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행위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내부 심의·의결기구로서 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 가가 참여하는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 써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행위자 인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0조, 제12조 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 토킹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 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다. 그 밖에 위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조치 및 보호조치 등 절차 안내
  - 4.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4조(긴급보호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7조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보호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 및 긴급보호조치통지서를 작성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 및 긴급보호조치통지서에는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보호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통지서는 스토킹행위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며, 스토킹행위자는 지체 없이 긴급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 다.
- 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가 긴급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스토킹행위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제5조(긴급보호조치 후 보호조치의 결정) ① 경찰서장은 소속 사법경 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보호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조치 심의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보호조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 1. 변호사
- 2. 교수
- 3.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보호조치) ① 경찰서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 금지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의결에 앞서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하 "스토킹행위자 등"이라 한다)을 불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있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두 차례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보호조치의 신청·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검사의 보호조치 요청)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주거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호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집행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보호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이 기재된 보호조치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스토킹행위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통지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① 스토킹행위자 등은 제7조제1항의 보호조치에 있어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문서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보호조치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 등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관 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①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 킹행위자 등에게 제12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등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한다.
- 제12조(행정심판 등) 스토킹행위자 등은 제7조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

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3조(집행의 부정지)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제12조에 따른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보호조치 결정의 집행 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14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3. 그 밖에 스토킹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 제1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 또는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스토킹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